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중 보건복지국(노인복지과)란 시설명란의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다음에 “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을 신설하고, 같은표 중 문화관광국(체육청소년과)란 시설명란의 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 다음에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를 신설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중 보건복지국(노인복지과)란 사무명란의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다음에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을 신설하고, 같은표 중 문화관광국(체육청소년과)란 시설명란의 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 관리운영 다음에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관리운영”을 신설한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또는 이사장 해임건의 ④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 기획예산실장, 시정기획관 및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각 국장과 공기업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p>	<p>(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투자기관이 장은 다음년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10월 31일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 투자기관의 장은 변경된 사항을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시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관의 경영목표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기관의 장에게 경영목표를 조정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p> <p>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위원장은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완료후 그 결과를 투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위원장은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에 대하여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사장 또는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p> <p>제7조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중랑·단천·가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를 “서울특별시중랑·가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로 한다.</p> <p>[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별표6] 하수처리사업소의 위치와 관할구역 (제111조제2항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
--	---

구 분	위 치	관 할 구 역
중량하수처리사업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	노원,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강북, 광진전역
가양하수처리사업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91	영등포, 관악, 동작, 구로, 양천, 강서, 금천전역, 강남, 서초, 광역시 일부
난지하수처리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	마포, 용산, 은평, 서대문전역, 종로, 중구, 성동일부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위와 그에 대한 각종 신고 기타 행위는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탄천하수처리시설장의 행정처분 등과 그에 대한 신고 등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기질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지하생활공간을 조성하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별 표]

지하공기질기준(제3조 관련)

항 목	적용기간 및 기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002년 1월 1일 이후
아황산가스(SO ₂)	1시간 평균치 0.12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시간 평균치 10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0ppm 이하
이산화질소(NO ₂)	1시간 평균치 0.14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4ppm 이하
미세먼지(PM-10)	24시간 평균치 200 μ g/m ³ 이하	24시간 평균치 140 μ g/m ³ 이하
이산화탄소(CO ₂)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24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납(Pb)	24시간 평균치 1 μ g/m ³ 이하	24시간 평균치 1 μ g/m ³ 이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생활공간"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지하시설로서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를 말한다.
2. "지하공기질기준"이라 함은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지하공기질기준) 지하생활공간이 유지하여야 하는 지하공기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①이 조례 제3조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존속기한이 개정되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